21.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2년 9월 30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회부일자 : 2022년 10월 4일
○ 상정일자 : 제29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2년 10월 14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정의관 경제국장)

□ 제안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 11. 19.시행)에 따라 신설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 수행을 위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다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안 제3조)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강조기간 운영(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제관)

□ 적법성 여부

○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그 예방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 주요 검토사항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조례의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고, 관내 산업재해예방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의 규정이 없으면 본 조례를 따르도록 했음.

○ **안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는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별·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지역별·업종별 대책, 산재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음.

- 다만, 계획수립 주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기본계획 5년 주기,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 매년

<지자체 산재예방 조례 표준안>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①자치단체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_____시(도)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_____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안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는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정책개발 및 연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는 시장이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 발굴·조사·개선·지도 및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신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음.

- 안 제6조 제3항에서는 안전보건지킴이의 자격으로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 제5항은 시장이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음.

○ **안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는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 중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력한 기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관련 세미나 및 모범사례 발표 등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5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을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구시에서도 이에 준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의 진흥 및 홍보의 활성화
2.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활동의 촉진
3. 산업 안전 및 보건 강조 기간의 설정 및 그 시행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2조(산업안전보건의 날 지정 등) ①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로 지정하고,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한다.

②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산업안전보건 대회 준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활동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개정「산업안전보건법」('21. 11. 19.시행)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표준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구시 실정에 맞게 고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산재예방 의무를 부여한 법률 개정('21. 5. 18.) 이후 지금까지 상당 기간 동안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점과 전국 17개 시도 중 대구 등 2개 자치단체만이 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부분[37]은 대구시의 산재 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임.

○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지역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인력 모집을 위한 예산 지원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37) 전국 시도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현황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정일	'20.1.9.	'20.5.27.	-	'21.4.9.	'20.9.28.	'21.10.1.	'20.12.29.	-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정일	'20.1.13.	'21.7.2.	'21.11.19.	'20.10.5.	'21.2.19.	'20.5.21.	'21.12.30.	'19.11.7.	'21.11.19.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 제4조의 산업재해예방대책 수립 주기는?	○ 고용노동부 기본계획은 5년 주기, 부산·울산 5년, 서울 3년 주기임, 대구시는 5년 정도로 수립할 계획임.
○ 대구형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때 주의할 부분이 많음. 잘못 운영하면 지나친 간섭으로 기업체 활동 축소될 우려가 있음.	○ 우려에 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시민의 입장에서 산재예방을 보자는 측면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개입이 없도록 운영하겠음.
○ 대구시 조례 제정이 타 시도에 비해 늦은 부분은 시의 정책적 관심 미흡한 것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대구시 전담조직 올해 1월 신설,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해당 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